

# 알기 쉬운 생활법

## 소비자파산이란?

봉급생활자, 주부,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<소비자파산>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법전에서는 <보통파산>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파산의 원인이 꼭 소비신용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주고, 보통파산이라는 용어는 특수한 파산은 무엇이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<법인파산>과 구분하여 <개인파산>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## 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. 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. 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 정도면 됩니다. 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'배째라'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럴 경우 악덕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파산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될 경우 법인의 이사로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퇴직해야 하며 또한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.

##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이란?

파산선고신청이 있는 후 파산선고결정 전에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구인과 감수(監守 ; 파산절차중 파산자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처분을 함으로써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명하는 법원의 명령)를 명할 수 있습니다. 구인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, 법원의 감수결정에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타인과 면회, 접견 또는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거주지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. 구인이나 감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

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파산법에 의하여 감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견이나 통신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## 심리

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서의 기재사항, 인지 등 보정이 가능한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것을 명하고 신청서에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각하결정을 합니다.

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서면 또는 구술변론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서면심리를 합니다. 파산절차는 파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을 부르거나 증인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, 기타 파산선고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
## 면책신청

### (1) 신청 시기

파산선고로 파산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파산자가 파산 선고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. 면책신청은 파산자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파산자를 불러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조사를 한 다음 면책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.

### (2) 결정의 효력

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으면 파산자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되고, 신분상 제한도 해제가 되나, 조세채무, 벌금, 과태료 등 채무,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, 고용인의 월급, 신원보증금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,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공동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.